
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및 2025년도 시행계획(안)

2025. 2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목 차

I. 추진 개요	1
II.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개념	4
III. 기본 방향	5
IV. 2025년 시행계획(안)	8
1. 지원계획	8
2. 참여대학의 책임과 의무	12
3. 사업 공모 및 평가 계획	18
4.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	21
V. 향후 계획(안)	23

I. 추진 개요

1 추진 배경

- 기술패권 경쟁 시대,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 中

 연구자 경력 전 단계 지원 사업 「마리퀴리 프로그램」 일환으로, 12억 5천만 유로 투입하여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의 최고 수준 연구활동 보장할 계획('24)

 STEM 분야 우수 대학원생 펠로우십 「GRFP」 운영 중으로('51년~), 1인당 지원 학비 상향(12천달러 → 16천달러) 등 3억 8천만 달러 규모 '24년 투자안 공개('23)

 청년 과학기술 인재 연구비 지원, 급여 상향 및 학술활동 매진 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 「청년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세부조치」 발표('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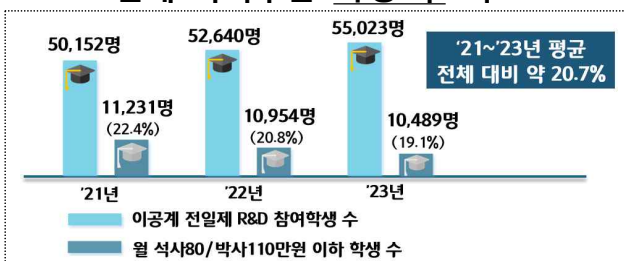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, 우수인재의 특정계열 쏠림현상 등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의 감소 추세 본격화* 예상

* △석사 : ('21) 4.6만명 → ('50) 2.2만명, △박사 : ('21) 4.1만명 → ('50) 2.0만명 ('22, STEP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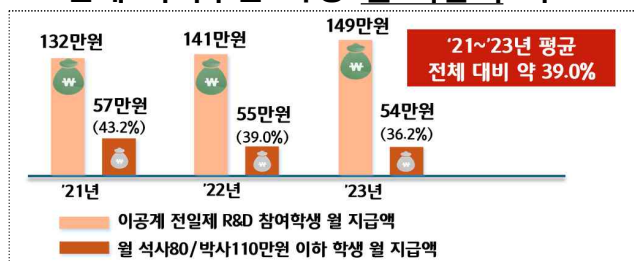
- 이공계로 진학한 대학원생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경제적 여건 불안으로 인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학생 상당수 존재

- 기존 학생연구자 지원은 교원이 수주한 R&D과제에 전적으로 의존, 지원 여건이 상이하고 과제 수주에 따라 변동성이 큰 구조
- 실태조사('24.6~11)에 따르면, 최근 3년간 최저수준 지원도 받지 못한 학생 비율이 약 20%에 달하며, 학생 간 지급 격차 역시 심화

< 전체-최저수준 학생 수 비교 >



< 전체-최저수준 학생 월 지급액 비교 >



⇒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할 **핵심 연구인력** 양성을 위해 미래세대 **이공계 진학 촉진** 및 **연구몰입 지원**에 대한 **정책적 요구 증대**

2 추진 경과 및 근거

□ 추진 경과

-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추진방향 발표('24.2.16)
- 사업기획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학 연구현장 의견수렴*('24.3~12)
 - * 이공계 대학원생, 연구부총장, 연구처장, 산학협력단 등 다각적 의견수렴(15회 이상)
- 이공계 대학원 학생지원금 실태조사 실시('24.6~12, 2차례)
-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('24.8.26)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('24.11~)
- 권역별 공청회 개최('24.12) 및 사업 시행계획 확정(~'25.2)

□ 추진 근거

- (근거 법령)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3 등

<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('24.11.28 개정) >

- 제9조의3(이공계 대학원생 지원)** ①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,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정부는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실태를 파악하고,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고,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④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
- (상위 계획)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·지원 기본계획('21~'25),
과학기술인재 성장·발전 전략('24.9)

<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·지원 기본계획('21~'25) >

-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 보장 지원제도 마련 및 안정적 인건비 지급체계 강화
 - 기존 학업장려금(Stipend) 도입·확대 검토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활성화
 - 박사과정생 대상 연구장려금 확대 등

< 과학기술인재 성장·발전 전략('24.9) >

-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한 이공계 학생 육성
 -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을 '25년부터 새롭게 도입하고 장학금 확대

3 현장의 목소리

□ 연구자를 꿈꾸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생활 여건 개선 필요

생활여건 개선 학생인건비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어

- ✓ 생활이 힘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기도 하는데, 스타이펜드가 도입되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 ('24.5월 학생연구자 간담회 中)

□ 학생지원 안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차원 지원구조 마련에 공감

대학차원 구조 마련 일부 우려 목소리 있지만, 학교 전체 차원의 안전망 마련해야

- ✓ 지금까지 학생인건비 지급은 교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연구비 불안정성에 취약
- ✓ 대학차원의 학생인건비 안전망이 필요하며,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과 많은 연구자의 동참이 필요 ('24.9월 연구부총장 간담회 中)

□ 학생지원 우수대학·연구실이 참여하도록 적극적 유인책 필요

인센티브 지원 운영성과 기반 인센티브 통해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 중요

- ✓ 최저지급액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실에 대한 혜택이 적기 때문에, 이들에 대한 역차별 방지 및 참여 독려를 위한 별도 인센티브 필요 ('24.9월 연구부총장 간담회 中)

□ 도덕적 해이 등 사업의 안정성 저해 사례 관리 방안 필요

안정성 저해 사례 관리 사업 부작용과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초점 필요

- ✓ 학생인건비 계상률을 낮추거나 기관계정 지원금에 장기 의존하는 경우 등의 도덕적 해이, 악용 사례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('24.9월 공과대학장 간담회 中)

□ 부족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, 기관계정 지속가능성 우려

예비재원 지원 당해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분 외에 예비재원 지원해야

- ✓ 갑작스러운 과제 중단, 연구비 축소 등 당해 학생인건비 소요는 예측하기 어려움
- ✓ 초기펀딩 충분해야 기관계정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('24.3월 연구처장 간담회 中)

□ 現 기준금액도 높지 않은 수준 → 지속적 지원 및 점진적 상향 필요

기준금액 상향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기준금액을 높여 나갈 필요

- ✓ 병사 월급도 200만원 주는 상황에서 학생연구자에게 80/11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소, 향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 ('24.9월 연구부총장 간담회 中)

II.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(한국형 Stipend) 개념

◇ 연구자를 꿈꾸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①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, ②학생 지원구조 보강과 ③대학단위 종합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

① 연구·학업 전념을 위한 이공계 대학원생 최소한의 생활 보장

-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R&D인건비 등 학생지원금을 매월 일정금액* 이상 보장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(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)

* 석사과정 月80만원, 박사과정 月110만원 (4대 과기원 사례, 1: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참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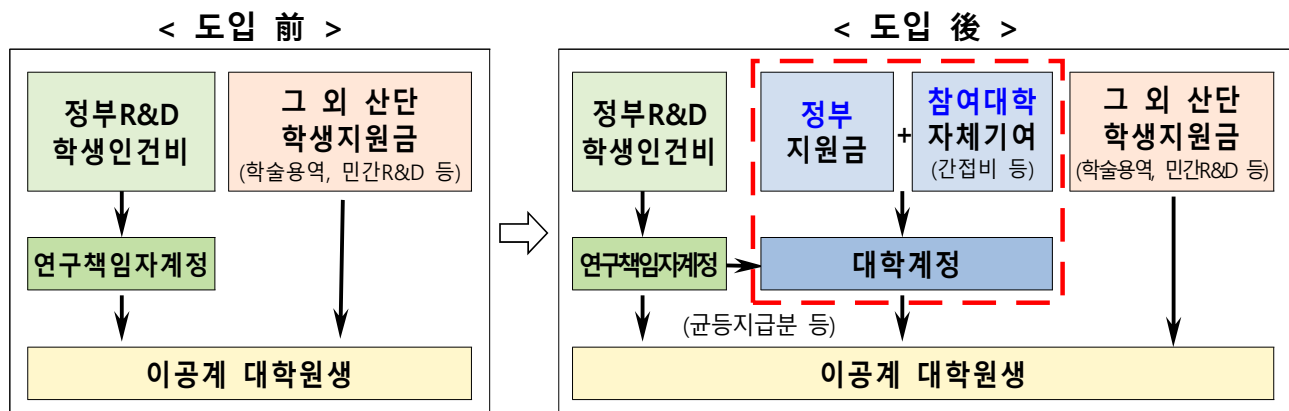
-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,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중인 기존 학생지원금(R&D 인건비 등)과 연계해 일정금액 지급을 보장

② 정부-대학-교원이 분담하여 학생연구자 지원구조 보강

- 대학단위 학생지원금 지급구조(정부-대학-교원이 분담)를 구축함으로써,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인건비 등 지원 강화 목표
- 정부지원금과 함께 대학자체 재정기여를 유도하고, 대학內 자율·책임 관리를 통해 기관단위 인건비 규모를 적정수준 이상 유지 필요

③ 학생연구자 지원실태, 연구이력 등 대학단위 종합관리체계 구축

- 대학차원에서 전체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·운용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이공계 학생연구자 정보 및 처우 관리 고도화
- 연구자로의 경로 시작 단계인 석·박사과정부터 연구과제 참여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자 경력개발 지원 강화



Ⅲ. 기본 방향

※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, 사업 점검·평가 결과 등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

1 비전 및 목표

비전	이공계 핵심 연구인력 확보 및 육성을 통한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
----	--



사업 목표	이공계 대학원 진학 촉진 및 연구·학업 몰입 지원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세부 목표*	도입기 (‘25-’27)	발전기 (‘28-’30)	안착기 (‘31-’33)
	대학 중심 체계 구축 및 학내 기반 조성	학생지원금 지급 안정성 및 수준 상향 유도	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 및 관리 책무성 확보

* 3년 단위로 점검·평가 후 기본방향과 목표 재설정



세부 추진 전략	대학 기관 중심 학생지원금 지급·운용 체계 구축		
	대학단위 통합관리체계 구축	■ 대학계정 기반 대학차원 학생지원금 지급·운용체계 마련 ■ 학생 지원정보 통합관리	
	이공계 대학원생 경제적 안정성 제고	■ 학생지원금 최저지급액 보장 (매월 석사과정 80만원, 박사과정 110만원) ■ 학생지원금 지급 수준 점진적 상향 유도	
	대학과 교원의 자율 책임성 확보	■ 대학 자율성 기반 운용체계 및 계획 수립·이행 ■ 운영 성과와 인센티브 연계	

2 기본 추진방향

① [통합체계] R&D인건비+연구생활장려금 연계 대학단위 통합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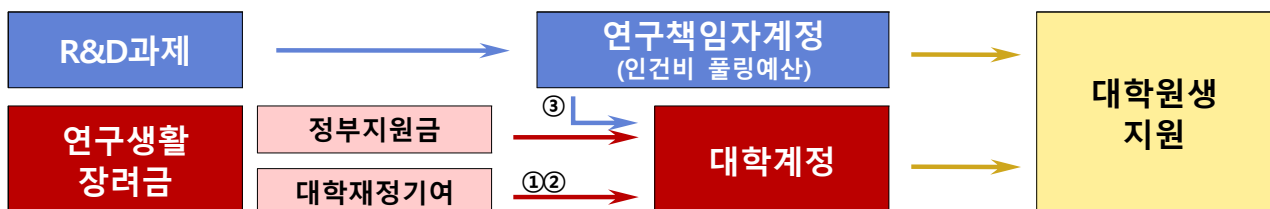
- 정부지원금을 중심으로 R&D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기존 산단회계 학생지원금과 연계하는 대학차원 통합 지급·관리체계로 설계

연구생활장려금 + 정부R&D 인건비 BK21 장학금 민간R&D 인건비 기타 학생지원금

- 이공계 대학원 학생지원금 확보·지급 현황정보를 대학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·학업 여건 관리 내실화

② [재정확충] 정부지원금을 토대로 대학차원 운용재원 확충

- 지속·안정성 확보 및 대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과 더불어, 대학의 적극적 자체 재정기여를 통해 운용재원 확충
- 대학 자율적으로 ①간접비, ②자체수입, ③학생인건비 수입액 등을 활용해서 점진적 운용재원 확충



③ [책임관리] 대학內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자율책임 기반 관리

- 대학별 여건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, 대학內 협의·조정 기반 운용단위(학과·단과대 단위도 가능) 및 방식을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

※ 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에 대한 대학차원의 책무성 강화

▶ 대학별 운영체계 확립
- 추진체계, 운영단위 등

▶ 재정확충 및 운용·관리계획 마련
- 대학재정기여, 지급관리 등

▶ 사업 안정성 저해 사례 방지·관리
- 도덕적 해이, 무임승차 방지 등

- 대학원생 지원이 체계적이고 우수한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학 자율적 관리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

3 세부 추진방향

- ◇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안착을 바탕으로 사업 평가 등을 통해 향후 추진계획 지속 보완·고도화
- ◇ 단기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되, 지원대상 확대 및 지급수준의 점진적 상향 유도

< 도입기 >

- ✓ 대학차원 학생 지원·관리체계 구축
- ✓ 일정수준의 대학원생 지원 보장



< 발전기 이후 >

- ✓ 참여대학·학생 범위 점진 확대
- ✓ 최저기준 및 평균 지급수준 상승 유도

□ [도입기]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

- 정부지원금을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의 △최저지급액을 보장하고, 대학자체 재정기여 유도를 통해 △기관단위 재원규모 확충
 - ※ R&D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 중심으로 지원(약 60여개 대학)
- △대학별 학생지원금 지급·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△주기적 운용·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의 현장 안착에 집중
- 지급·운용 실적점검 결과를 차년도 정부지원금 및 인센티브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참여대학의 책무성 확보

□ [발전기 이후] 대학차원 운용재원 확충 및 지급수준의 점진적 상향

- 연구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대학 중심으로 참여대학을 점진 확대하고, 최저 기준금액도 점진적으로 상향 추진
 - ※ 정부R&D 사업 등과 연계해 학생인건비 수준도 점진적으로 상향 유도
- 대학별로 조성·확충된 기관계정 재원을 바탕으로 평균 지급수준을 상향하고, 대학 자율적 학생지원 확대 유도
- 정부R&D 사업 및 이공계 대학 지원을 위한 타 사업과 연계해 대학원생 연구활동 지원 체계화 추진

IV. 2025년 시행계획(안)

※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

IV-1. 지원계획

1 사업 개요

- ☐ 사업기간 : '25 ~ '33년 (총 9년)
- ☐ 사업예산 : '25년 60,000백만원 (전문기관 사업관리비 500백만원 포함)
- ☐ 지원내용 ※ 산출방식 등 세부내용은 10~11p 참고
 - ① 학생인건비 일정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 규모
 - ②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
 - ③ 연구생활장려금 대학별 운영비

2 신청 단위 : 대학

- ☐ 신청 단위 :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(단, 4대 과학기술원은 제외)
- ☐ 신청 조건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제4호 등에 따른 통합관리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(이하 대학계정)을 필수적으로 설치·운영해야 함
 - ▶ 사업공고 시점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을 받지 못했으나,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('24.10)하고 점검 중인 대학은 신청 가능(다만, 지정 이후 사업시행 가능)
 - ▶ '25년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추가신청 예정 대학은 '25년 하반기부터 사업 신청 가능(다만, 통합관리 신규 지정대학(기관단위 전환대학 제외)은 계정 운영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참여 여부 결정 검토)
 - 대학별 산학협력단장을 사업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대학단위로 신청
 - ▶ 소속대학 모든 이공계 대학원 교원이 참여하여, 대학(산단)과 함께 소속 이공계 대학원생 전체에 대한 인건비 지급 현황 정보를 파악·관리하여야 함
 - ▶ 학과·단과대학 단위로 사업신청 불가, 분교의 경우 본교에서 1개 대학으로 통합 신청
 - ▶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
 - 대학별 「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운영규정」을 마련하고, 지침에 따른 안정적 사업 운영·관리 ※ 연구개발비 교부 시점까지 규정 제정 완료 필요

3 지원 대상 : 대학원생

□ **지원 대상 :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**
(외국인 유학생 포함)

○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따른 학생연구자로, 석·박사 학위과정생(통합과정생 포함) 또는 연구등록 수료생

- ▶ **(통합과정생)** 각 대학 학칙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석사 또는 박사과정 중 하나로 구분
※ 단, 학칙 등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, △학·석사 통합은 8학기 초과자를 석사과정으로, △석·박사 통합은 4학기 초과자를 박사과정으로 봄
- ▶ **(연구등록 수료생)**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,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 준비 등을 위해 등록한 자

< 지원대상 학생 세부기준 >

① **(이공계 범위)**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1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상 자연과학계열,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

- ※ 단, 소속 대학원이 의학계열에 해당하더라도, △세부전공이 기초연구(임상제외)로 △면허증·자격증(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수의사)을 보유하지 않고, △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
- ※ 기타 융합학과·전공 등의 경우 대학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름

< 대학설립·운영 규정 별표1의 계열별 구분 >

대계열	포함되는 소계열
자연과학계열	이학, 해양, 농학, 수산, 간호, 보건, 약학 및 한약학 등을 포함
공학계열	공학 등
의학계열	의학, 치의학, 한의학 및 수의학 등

② **(전일제 범위)**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는 전업 학생(Full-Time)으로, 대학별 자체 규정 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

- ※ 대학은 매년 4월 1일,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전일제 여부 확인 필요(4대 보험가입 여부 등)

< 비전일제 기준(안) >

- ▶ 매년 4/1, 10/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(취업자) 또는 자격증/명의 대여 학생
- ▶ 매년 4/1, 10/1일 기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(시간강사)
- ▶ 매년 4/1, 10/1일 기준 4대 보험에 가입된 대학의 (행정)조교
- ▶ 사업총괄책임자 승인 없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회사·교내 벤처기업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

③ **(연구활동 범위)** 정부·민간·지자체·대학 등이 지원하는 R&D과제 또는 용역과제, 학위논문 연구 등 모두 포함, 연구참여확약서·과제협약서·지도교수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산단이 판단

- ※ 신규 혹은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경우도 포함
- ※ 현재 연구개발·용역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과거 참여이력이 있고 학위논문 연구중인 경우도 포함(단, 최대 지원기간은 1년 이하로 대학별 자율 설정 必)
- ※ 학생은 학적 및 전일제·연구활동 여부 등에 변동사항 발생 시 대학에 신고 必

4 지원 내용

① 학생인건비 일정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

②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

③ 연구생활장려금 대학별 운영비

◇ 신청대학은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지원금 규모를 산출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함

① 연구활동(R&D참여) 수행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통해 매월 학생지원금*을 지급하는 석사·박사과정별 대학원생 명부 및 대상 학생 수

* 정부·민간·지자체·대학 지원 R&D과제, BK21, 대학재정지원/인력양성사업, 기타 용역과제 등 산단회계로 관리·지급하는 일체의 학생지원금(학생인건비·장려금 등 명칭 무관)

② 파악·조사된 명부의 대학원생별 매월 지급총액 및 재원별 지급 금액

※ 대학별 사업규모는 아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되,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※ 대학은 학내 합의에 따라 산단회계 外 학생지원금을 최저지급액 미만으로 받는 학생을 포함하여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(단, 산단회계 지급 학생과 구분 관리 필요)

① 학생인건비 일정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 지원

○ 대학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최저지급 보장(석사과정 月 80만원, 박사과정 月 110만원) 부족금액은 정부지원금으로 전액 지원

○ 신청대학은 최근 4년간('21년~'24년) 대학원생 지급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연간 평균 부족금액을 산출*하여 제시

* 지난 2차례 실태조사 결과와 사업신청서상 금액 차이가 큰 경우 사유 제시 필요

< 산출방식 >

▶ 대학별 최근 4년 평균 최저지급액 부족분(A)

= $\sum$ '21~'24년 [(최저지급액 미만 학생 수 × 최저지급액) - 미만 학생 실수령액] / 4

< 산출 예시 > OO대학교의 최근 4년('21~'24) 기준금액(80/110) 이하 석·박사 대학원생

연도	최저지급 미만 학위과정생 수(명)		최저지급 미만 학위과정생 실수령액(억원)	
	석사과정	박사과정	석사과정	박사과정
2021	80	70	2	4
2022	90	80	3	5
2023	100	90	5	6
2024	100	100	5	10
합계	370	340	15	25

- (석사과정) (370명 × 80만원 × 12개월 - 1,500백만원) ÷ 4 = 513백만원

- (박사과정) (340명 × 110만원 × 12개월 - 2,500백만원) ÷ 4 = 497백만원

- (산출식) OO대학교 = 513백만원 + 497백만원 = 1,010백만원

②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

- 평균 부족금액 지원만으로 최저지급 보장이 어려운 상황*에 대응하면서, 대학계정 운용자금 확충을 위한 추가 지원

* 대학별 연구비 수주규모는 매년 변동성이 커 일시적 학생인건비 부족상황 발생 가능

- 대학별 대학원생 규모에 비례하여 예비재원 산출·지원

< 산출방식 >

- ▶ 일시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재원(B) 대학별 산출금액

= 대학별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 수* × 80/110만원 × 12개월 × 2%

* ∑ '24년 매월 산단에서 학생지원금을 지급한 학생 수 / 12

< 산출 예시 >

구분	'24년 연구과제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 수(명)		
	석사과정	박사과정	합계
OO대학교	500	250	750

- (석사과정) 500명 × 80만원 × 12개월 × 2% = 96백만원

- (박사과정) 250명 × 110만원 × 12개월 × 2% = 66백만원

- (산출식) OO대학교 = 96백만원 + 66백만원 = 162백만원

※ 추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 등 조정 가능

③ 연구생활장려금 대학별 운영비

- 대학차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및 지급·관리 시스템 정비·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
- 공통적으로 시스템 정비·운영 비용(30백만원)을 계상하고, 학교별 대상 대학원생 수에 비례하여 운영비 산출·지원

< 산출방식 >

- ▶ 대학별 운영비(C)

구분	연구과제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 수(명)		
	500명 미만	500명 이상~1,000명 미만	1,000명 이상
시스템 정바운영	30백만원		
전담인력 운영비(12개월 기준)	50백만원	100백만원	150백만원

※ 지원내용 3개 항목(①~③) 산출 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, 하반기 참여대학 추가 선정 등 검토

※ 전년도 지급실적을 토대로 차년도 인센티브 반영 및 세부 조정 가능

IV-2. 참여대학의 책임과 의무

1 연구생활장려금 종합 운영체계 마련

□ 중장기 목표 설정

- 참여대학은 학내 여건과 연구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핵심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야 함

【사업 핵심 성과지표】

- ① 일정수준 금액 미만 지원 대학원생이 없도록 관리
- ② 기준금액 수준의 지급 대학원생 수를 점진적으로 감소
- ③ 이공계 소속 대학원생 평균 지급수준의 점진적 향상

□ 대학별 추진체계 및 운영규정 마련

- 참여대학은 운영기준 및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운영규정*과 의사결정 구조 등 추진체계*를 마련해야 함

* **【운영규정】** [별지1] <대학별 운영규정 작성 지침> 및 전문기관의 사업 운영지침 참고, 사업 신청 시 규정 전문(안) 및 제정 일정·계획 제출 → 대학별 연구개발비 교부 전 제정 완료 필수 (사업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수립한 '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지침'에 따름)

* **【추진체계】** 기존 운영 중인 학내 기구 등을 감안해 주요 의사결정 구조(위원회 등), 사업 총괄부서 및 세부사항별 소관부서 등 역할분담 체계를 설계하고, 전담인력·조직을 확충

□ 표준업무절차 마련

- 참여대학은 자율적으로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위한 운영단위*를 결정하고, 이에 따른 산단-운영단위 간 역할분담, 표준업무절차*를 마련·운영해야 함

* **【운영단위】** (예) △대학계정만 운영, △대학계정-단과대학계정-학과계정 연계 운영 등

* **【표준업무절차】** 학생별 월별 최저지급액 확인·보장 절차, 계정별 지급대상 학생 선정 절차, 무임승차 등의 기준과 해당 여부 확인 및 조치 절차 등 사업 집행·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

2 대학계정 자체기여 및 지급·운용 계획 수립

□ 대학계정 자체 재정기여 계획 마련

- 참여대학은 ①간접비, ②자체수입, ③학생인건비 수입액 등을 활용해 대학계정의 운용재원을 확충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

※ 대학자체 재정기여 계획에 대한 점검·평가를 통해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부여 검토

【대학의 자체 재정기여 방법 예시】

- ① **[대학간접비]** 간접비 사용기준에 학생인건비 항목 신설 예정 → 기관계정에 기여 가능
- ② **[대학자체수입]** 발전기금, 등록금, 이자·임대수익 등 대학 자체수입 중 일부
- ③ **[교원학생인건비]** 대학내 자율협의를 통한 학과·단과대 단위 자발적 기여
※ 연구책임자의 자발적인 학생인건비 기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의 인센티브 방안 강구

□ 대학계정 지급·운용 계획 수립(정부지원금 + 대학자체 재정기여)

- 참여대학은 기존 산단 학생지원금과 함께 운용재원(정부지원금 + 자체 재정기여)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·운용 계획*을 수립해야 함

* 당해연도 최저지급액 보장필요 학생 수, 예상부족분, 지급목표 및 달성방안 등

-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비 고시의 균등지급 원칙에 따라, 최저지급액 수준(석80/박110 이상)을 균등지급액으로 설정하도록 권고

※ 다만, 비통합관리 재원 및 기타 대학별·연구실별 운영 여건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

□ 대학계정 잔액목표 설정·관리(지속가능성 확보)

- 참여대학은 정부지원금과 자체 재정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계정 잔액목표를 설정하고 연중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

- 잔액목표는 일시수요 대응 예비재원 금액 이상으로 설정·관리 권고

※ 예비재원까지 활용해야 할 경우, 연차점검 시 지출사유 등 설명

정부지원금	(A) 대학별 부족분 4년 평균 (B) 대학별 일시수요 대응 재원
대학기여분	(C) 대학별 자체 재원 기여



- ▶ 대학별 운용재원 = (A+B+C)
- ▶ 잔액목표 = 최소 (B) 이상 설정

- 참여대학은 자체 재원기여분에 대한 수입 계획과 함께, 부족분 외 학생지원 사항에 대한 지출·적립 계획을 마련

< 연구생활장려금 기관계정 운영 예시 >

1. 균등지급 권고 이행하는 경우 (균등지급액 = 80/110)

- ▶ 학생별 최저기준 충족 확인을 통해 연구생활장려금 지원규모(부족분) 산정
- ▶ 소속학생에 균등지급하기 위한 필요금액을 연구책임자계정 → 대학계정으로 이체
- ▶ 대학계정에서 모든 학생에 80/110만원 균등지급, 그 외 금액은 연책계정에서 지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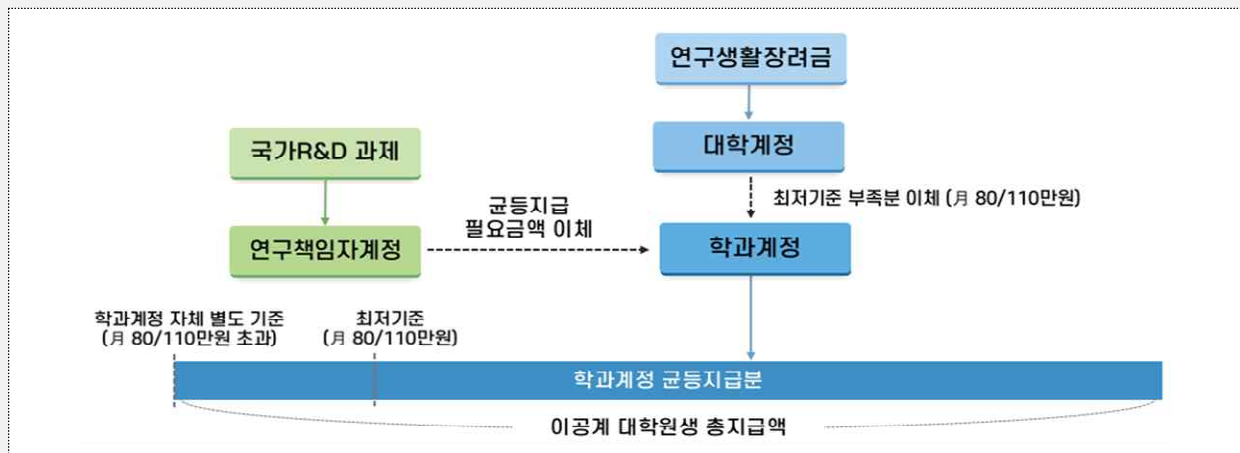
2. 균등지급 예외 적용하는 경우

- ▶ 비통합관리 자원(민간R&D·기타 연구용역과제 등)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, 최저기준 미만 학생에게 대학계정에서 부족분만큼만 차등 지급



3. 학과계정에서 자체 별도기준(80/110 초과) 설정하는 경우

- ▶ 학과별 협의를 통해 별도기준 설정하고, 학과 내 교원별 재정기여 방안 협의
- ▶ 최저기준 부족분 대학계정→학과계정으로 이체, 균등지급을 위해 연책계정→학과계정으로 이체
- ▶ 학생별 별도기준 충족 확인 및 학과계정에서 별도기준 부족분 지원



3 학생 지원정보 통합관리

□ 지원대상 대학원생 규모 및 재원별 지급현황 실태정보 관리[별지2]

- 참여대학은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처우 수준에 관한 정보를 다음 사항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파악·관리해야 함

① 【월별 이공계 대학원생 명부】 [별지3-1]

- 연구수행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통해 매월 학생지원금*을 지급하는 이공계 전체 대학원생 명부

* 국가·지자체·민간·대학 R&D과제 학생인건비, BK21 장려금, 대학재정지원/인력양성사업, 기타 용역과제 등 산단 회계를 통해 대학원생에게 관리·지급하는 사항 일체

② 【월별 대학원생의 재원별 지급내역】 [별지3-1]

- ①의 대학원생별로 매월 지급총액 및 재원별* 지급금액

* ①통합관리재원은 △대학계정, △세부 기관계정, △연구책임자계정으로, ②비통합관리 재원은 △정부R&D, △민간R&D, △지자체R&D, △BK21, △그 외 정부지원사업, △기타 등으로 구분·관리

※ 대학 산학협력단은 소속 학생의 타 대학, 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 현황을 파악하고, 이를 기준액 충족 여부 판단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함

③ 【기관계정(대학·학부·학과)의 전체 수입·지출·잔액 내역】 [별지3-2]

- 참여대학은 실태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·구축계획을 마련하고, 협약 체결 후 6개월 내 정비·구축을 완료해야 함

* 대학별 운영비 지원항목에 전산시스템 정비·구축 예산 포함 지원

4 사업의 안정성 저해 사례 등 관리·방지 방안

- 참여대학은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안정성 저해 사례(도덕적 해이, 부정수급 등) 방지 등 현장안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

※ 사업 안정성 저해 사례 방지를 위한 대학별 대응계획 마련 필요

- 참여교원, 대학원생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학 자율적 관리방안을 마련·시행하고, 운영규정에 반영해야 함

- 참여대학은 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기관계정 운용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함

* 이미 시행 중인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, 수혜를 받은 연구실의 연구비 수주 시 기관계정에 일부 기여하도록 하는 대여-상환 방식으로 운영

< 사업의 안정성 저해 사례 관리·방지를 위한 고려·조치사항 예시 >

① 지원대상 대학원생 범위 설정

- ▶ 산학협력단을 통해 매월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대학원생의 포함 여부
- ▶ 정부R&D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보유 중인 연구실의 대학원생 지원
→ 잔액 규모 확인 및 최저지급액 목적으로 연책계정 잔액을 먼저 활용하도록 조치
- ▶ 취·창업, 학적변동 등 전일제 대학원생 여부 변동 관리방안 및 조치계획

② 대학원생 과다 선발 관리

- ▶ 정부지원금 수혜를 받는 연구실에서 기존 학생규모 외 추가적 대학원생을 선발할 경우, 대학차원에서 관리(졸업 이후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는 제외)
※ 대학자체 재정기여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지 등 대학 자율적 방침 설정 필요
- ▶ 정부지원금을 수혜 받지 않는 연구실에도 전년대비 학생 수를 대폭 늘릴 경우
※ 학생인건비 연책계정 잔액 규모 및 연구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학 자율적 방침 설정 필요

③ 과제 內 인건비 과소계상 관리

- ▶ 연구실별 수주 과제 협약 시 인건비를 축소하여 계상할 경우 → 인건비 축소 사유를 파악하고 의도적인 계상 축소라고 판단될 경우 조치

④ 연구실별 과제 수주현황 파악·관리

- ▶ 연구실별 과제수주 및 연구비 상황을 지속 파악, 지급·관리계획을 점검·보완
- ▶ 특히, 정부지원금 수혜를 받는 연구실의 신규과제 수주 시 조정·관리
※ 대학 내 협의·조정을 통해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규모를 재조정하거나, 추후 상환하는 방식 등 검토

⑤ 지속적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△대여-상환, △상호부조 기반의 보험 모델 등 운영

- ▶ 연구생활장려금 수혜를 받는 연구실이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, 이를 통해 경쟁기반의 과제를 수주하는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학차원 운영방식 설정
- ▶ 정부지원금 수혜 시 일정기한 내 지원금을 다시 기관계정으로 상환토록 하는 '대여-상환*' 모델 또는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'보험 모델' 운영을 권고
* 일정기한 내 미상환 시 대학차원 페널티 설정 및 학문분야근속기간 등에 따른 상환기한 차등 적용 등

< 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대여-상환제도 운영 사례 >

구분	KAIST('20년 1학기~)	DGIST('24년 1학기~)
재원/ 규모	- 학교 자체 예산 10억원	- 이직교원 학생인건비 반납분 7억원
책임성 확보	- 해당 학과 정원·자원 등 조정 검토 ※ 현재까지 사례 없음	- 미상환 시 재심의 후 기한연장 검토 - 해당교원 외부과제 수주 모니터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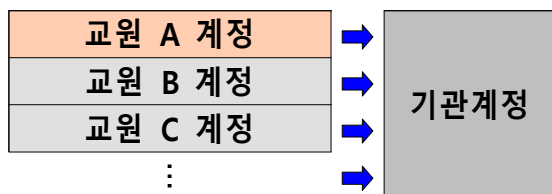
< 연구생활장려금 운영 모델 예시 >

1. 교원 간 상호부조 기반의 '보험' 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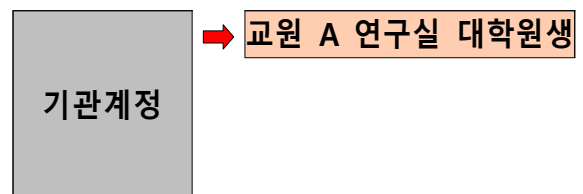
- 모든 교원(연구책임자)이 직면할 수 있는 “연구비 부족으로 인한 학생인건비 부족”이라는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

→ 교원들이 “연구비 일정률(%)을 대학계정에 이체”하고(=보험료 납입),
 “학생인건비 부족분 발생 시 기관계정에서 지원”(=보험금 지급)

※ 대학별 실정에 따라 기관계정 이체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, 정부지원금, 간접비 등을 우선 활용하고 대학 차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교원의 자발적 기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가능



< 운영단위별 공통 보험료 납입 및 축적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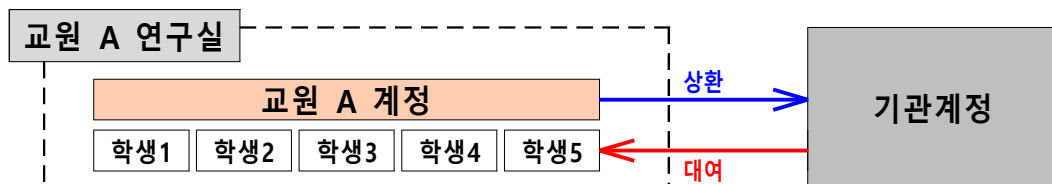
< 교원 A 연구실 부족분 발생 시 보험금 지급 >

2. 교원 개인 책임 기반의 '대여-상환' 모델

-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교원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여-상환 제도를 선택적으로 운영

→ 학생인건비 부족분 발생 시 “기관계정에서 우선 지원”하되(=대여),
 일정 기간 내 연구비 수주 시 “지원받은 만큼 기관계정에 이체”(=상환)

※ 대학별 실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미상환 시 대학 차원의 페널티 설정 혹은 재심의 후 연장하거나, 학문분야·근속기간 등에 따라 상환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식 선택 가능



IV-3. 사업공모 및 평가 계획

1 일정 및 제출 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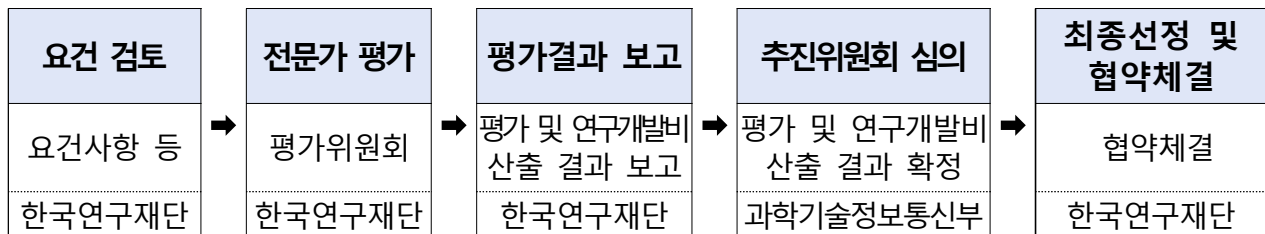
- **일정** : '25.2월 사업 공고 → '25.3월 사업 신청서 제출 → '25.3~4월 참여 대학 확정 → '25.4~5월 대학별 컨설팅 및 연구개발비 교부 등
※ 세부내용은 23p 참고

- **제출 서류** : 사업 참여계획서* 및 증빙서류

* △사업 목표 및 운영방안, △학생지원 현황 및 재정기여 계획, △재정 지급·운용 계획, △사업 관리 방안 등

2 평가 계획

- **평가 절차**



- **요건 검토 및 참여계획 평가**

- (요건 검토) 대학별 제출 서류 및 연구개발비 신청액의 적정성 검토
- (전문가 평가) 대학이 제출한 참여계획서의 △운영체계, △지급·관리 계획, △대학자체 재정기여 계획 등을 점검·평가
- 동 사업 핵심 성과지표*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대면 컨설팅 등 추가 실시

* ① 기준금액 미만 지급 대학원생이 없도록 관리
② 기준금액 수준의 지급 대학원생 수를 점진적으로 감소
③ 대학원생 평균 지급수준의 점진적 상향

□ 대학별 지원규모 산정

- 대학별 부족분과 예비재원, 운영비 등은 대학별 신청금액을 최대한 인정하되, 기존 실태조사 결과와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검토

※ 일정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 우선 배분 →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규모 조정 가능

- 지원내용 3개 항목(①~③) 산출 후 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, 하반기 참여대학 추가 선정 등 검토

□ 점검·평가 항목(안)

구분	주요 평가항목 및 내용	배점
학생지원 및 재정기여 노력	▶ 최근 4년('21~'24) 산학협력단 학생지원금 지급 실적(산단회계) - 학위과정별 평균 지급금액, 일정수준 미만 학생수 비율 등 ▶ 대학자체 학생지원금 지급 실적(산단회계 외) - 산단회계 외 학생지원금별 수혜 이공계 대학원생 수 및 지원 규모 (정부지원 국가장학금 등 모든 대학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외) (평가지표 예시 : '장학금 지급 총액/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수') ▶ 기관계정에 대한 향후 대학자체 재정기여 계획 - 대학계정 자체재원 확보 방안 및 예상 수입액 (평가지표 예시 : '대학계정 자체지원금/정부지원금' 등)	50
운영체계	▶ 학교차원 중장기 목표설정 및 운영방향 - 학내 여건과 연구비 상황을 고려한 핵심 성과지표 관리 계획 ▶ 학교차원 의사결정 체계 및 운영규정 제정 계획 - 운영규정 제정계획, 의사결정체계, 전담인력 운영계획 등 ▶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표준업무절차(사업 집행·관리 제반 절차) - 운영단위 설정, 스타이펜드 대상학생 범위 설정, 최저지급액 확인·보장 절차 등	15
지급·운용 계획	▶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재정 운용계획 - '25년 예상 수입액, 일정수준 미만 학생수 파악 및 지급·관리 방안, 인센티브 지원 시 운용계획 ▶ 기관계정 적립·운용 계획 - 기관계정 수입액과 연도말 잔액 목표설정 ▶ 핵심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운용계획 - 최저지급 보장 및 해당학생 감소, 지급수준 점진상향 계획	15
관리계획	▶ 이공계 대학원생 경제적 처우(지급현황) 정보관리 계획 - 대학원생 명부, 재원별 지급내역, 기관계정 수입·지출·잔액 내역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▶ 대학차원 자율·책임 기반 관리 계획 - 도덕적 해이, 지속적 무임승차 등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계획	20
합 계		100

3 성과관리 방향

□ [연차점검] 지급·운용 실적을 토대로 차년도 정부지원금 연계·조정

- (점검항목) 매년 참여대학의 최저지급액 보장 여부, 인건비 지급수준, 대학 차원 관리체계 지속가능성 등 대학별 운영결과 점검
 - 특히, 1차년도는 사업의 현장안착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, 학생에 대한 최저지급액 보장을 중점적으로 점검
- ※ 대학원생에 대한 재원별 지급내역, 기관계정 수입·지출·잔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점검
- (차년도 예산 연계) 연도별 학생인건비 지급·운용 실적 점검결과를 차년도 정부지원금과 연계함으로써, 참여대학의 책무성 확보
 - 아울러, 핵심 성과지표* 등 평가결과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우선 배분 검토
- * △최저지급액 보장 여부, △최저수준 지급 학생 수 감소, △지급수준 전반적 상향 등
- (미흡조치) 점검결과 미흡대학은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예정

□ [정기평가] 3년 단위로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해 지원구조 재설계

- 시기별 목표설정(도입기 → 발전기 → 안착기)에 따라, 3년 단위로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지원구조를 고도화·재설계
 - ※ 정기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지원 중단 및 동 사업 참여 제한 가능
 - ※ 사업 최종연도의 경우 최종평가 실시하되, 관련 평가계획은 추후 수립 및 안내 예정
- 대학단위 학생지원금 지급·관리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,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
- 향후 3년 단위 지원구조 재설계는 지급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함으로써,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·학업 지원을 목표로 설계
 - 정부R&D 사업 및 그 외 인건비성 대학 자체 장학제도 등과 연계 운용 방안 검토

IV-4.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

1 사업 추진체계



-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사업 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, 예산 지원 등
- (한국연구재단) 사업관리* 및 운영 위탁에 따른 사업 공모·협약·평가 및 대학별 운영실태 점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역할 수행

*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지원, 연구개발비 집행·관리, 대학 심사 및 성과평가·분석, 컨설팅, 현장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등

- (사업추진위원회) 사업관리·운영에 관한 자문, 참여대학 및 대학별 연구개발비 확정, 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

※ 관계부처 협의회 : 사업 소관부처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 간 사업 추진사항 논의

- (추진협의회) 참여대학 간 사업 발전방안 및 연계·협력 방안 등 논의

2 사업 관리

□ 협약 체결

- 참여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은 전문기관의 장(한국연구재단)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의 책무성 확보

□ 연구개발비 교부 및 집행

- (교부) 연구개발비는 학기별로 대학에 총액으로 교부하며, 산학협력단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
- (집행) 대학에 배분된 연구개발비 중 대학별 운영비(③)를 제외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금액(①+②)은 대학계정으로 통합관리
 - 참여대학은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소속대학 학생의 최저지급액 보장 여부를 관리하되, 부득이한 경우* 소급하여 지원 가능(3개월 이내)
 - * 협약체결 지연에 따라 학사 개시일('25.3.1) 이후 지원 공백 발생하는 경우 포함 검토
 - 참여대학은 일정 수준의 대학계정 예비재원을 상시 보유(잔액 목표 이상)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그 이상의 여유재원은 자율 운용* 가능
 - * (예) 인건비 우수지급 Lab 또는 대학계정 우수 기여자 Lab에 추가 배분 등
- (점검) 참여대학은 연구개발비 집행 실적(수입·지출 잔액) 자체 모니터링 필요
 - 전문기관은 집행 실태점검 및 부당집행 확인 시, 현장점검, 연구개발비 환수·삭감, 지원 중단 등 조치 가능

□ 연구개발비 정산 및 결과보고

- (정산) 연구개발비는 '26년 2월말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, 대학계정에 이체한 연구개발비는 적정하게 사용*한 것으로 간주함
 -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제2항에 근거
- (결과보고) 연도별 사업 종료 시 사업기간 내 사업 추진실적 등을 포함한 학생인건비 지급·운용 실적 보고서 제출(연구개발비 집행 내역 포함)

V. 향후 계획(안)

※ 이하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 가능

구분		주요 내용	추진시기
공고	과기 정통부	① 사업 시행계획 수립 ▶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, 참여대학 의무·관리사항 등 확정 ② 사업 공고	'25.2월
	연구 재단	③ 사업 운영지침 안내 ▶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지침 안내	'25.2월
신청 · 검토	참여 대학	④ 필수 제출서류 구비 ▶ '21~'24년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원 현황 ▶ 사업 참여계획서 -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계획 - 대학 자체재정 기여 및 대학계정 운용 계획 -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정보 통합관리 계획 - 사업의 안정성 저해 사례 관리계획 등 ▶ 사업 운영규정 수립 계획(안)	'25.2~3월
	연구 재단	⑤ 제출서류 검토·평가 및 참여대학 최종 확정 ▶ 대학별 참여요건 검토 및 지급·운용 계획 등 평가 ▶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참여대학 및 연구개발비 규모 확정	'25.3~4월
사업 수행	연구 재단	⑥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및 확정 ▶ 보완 필요 대학에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후 계획 확정	'25.4~5월
	참여 대학	⑦ 대학별 연구개발비 교부 및 사업 수행 ▶ 최저지급 보장(석80/박110만원) 부족금액 지급 ▶ 대학계정 재정건전성 관리 ▶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정보 통합관리 ▶ 사업 안정성 저해 사례(도덕적해이, 무임승차 등) 모니터링 등	'25.5~ '26.2월
	연구 재단	⑧ 연차점검(실태점검) 및 차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▶ 당초 계획 대비 실적 평가 ▶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연구개발비 조정 및 지원	'26.2~3월

□ 운영규정 수립 절차

- 참여대학은 사업 신청 시 자체 운영규정(안) 제출 → 전문가 평가 후 필요대학에 보완 조치 및 컨설팅 → 연구개발비 교부 전까지 수립 완료·제출

□ 기본 방향 및 규정 항목

- (기본 방향) 전문기관의 사업 운영지침을 토대로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별 연구생활장려금 자체 운영규정 수립
 - 교원, 대학원생 및 산학협력단 담당자 등 주요 참여주체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내 여건에 부합하는 세부 운영기준·관리방안 등 반영
- (필수 항목) 아래 핵심 관리·점검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규정(안) 작성

- ① 사업 추진체계 : 주요 의사결정 구조, 전담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체계 등
- ② 연구생활장려금 표준업무절차 : 연구생활장려금 운영 단위, 최저지급액 확인·보장, 지급대상 선정·확인, 사업의 안정성 저해 사례 점검·조치 등에 관한 사항
- ③ 대학계정 및 연구생활장려금 운용·관리 방안 : 대학 자체재정 기여 계획, 잔액 목표, 최저지급액 기준, 기준금액 미만 학생 지원, 우수 참여교원 인센티브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④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정보 통합관리 방안 : 매월 산단회계 학생 지원금 지급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명부 관리, 월별·재원별 지급 내역 관리, 기관 계정 수입·지출·잔액 내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⑤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·관리 방안
- ⑥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방안
- ⑦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

- (자율 항목) 대학계정의 지속가능성 확보, 주요 참여주체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학내 협의 기반으로 자율 관리방안 추가 규율 가능

< 자율 관리방안 예시 >

- ① 대여·상환제 : 연구생활장려금 수혜교원은 일정기한 내 지원금을 기관계정에 상환
 - ② 교육·강의 시수 : 연구생활장려금 수혜 교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교육·강의 시수 조정
 - ③ 월별 지급액 평준화 : 불필요한 대학계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 월별 지급 수준 안정화
- ※ 예시 : 3월 75만원 - 4월 55만원 - 5월 110만원 → 3월 80만원 - 4월 80만원 - 5월 80만원

1 학생 지원금 정보 연동·취합

- 월별로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내역이 있는 모든 이공계 대학원 소속 학생의 재원별* 지급내역을 통합·관리
 - 기존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중인 개별 시스템(정부 R&D 학생인건비, BK21 장학금, 민간 R&D 등 지급·관리시스템) 정보를 연동·취합

☞ (연동·취합 범위) 국가·지자체·민간·대학 R&D과제 학생인건비, BK21 장려금, 대학재정지원/인력양성사업, 기타 용역과제 등 산단 회계를 통해 대학원생에게 지급·관리하는 사항 일체

- 대학 산학협력단은 소속 학생의 타 대학, 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 현황을 파악하고, 이를 기준액 충족 여부 판단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함
- ※ 교비 재원(장학금 등) 중 일부를 기준액 충족 여부 판단 시 반영할 경우, 기준액 충족 여부 판단 시 반영/미반영할 재원을 구분해 조회·집계 가능해야함

< 시스템 기능 구현 요건 [별지3-1] >

- ① 모든 재원별 개별 시스템에 월별로 입력된 지급내역 정보가 최소 월 1회 학생 지원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연동되어야함
 - 재원별 개별 시스템도 월별 지급·입력을 권장, 미지급한 월은 "0"값 입력 필요
- ② 월별로 학생별 인건비 지급 합산값이 확정 및 표출 가능해야함

2 지원대상 학생 구분·관리

- 월별로 연구생활장려금 대상/비대상 학생을 구분하고, 대상 학생의 재원별 지급내역 합계의 기준액 충족 여부 확인

☞ (기준액) 사업 참여 요건은 석사 월 80만원, 박사 월 110만원이나, 학교/학과별로 자체 기여 등을 통해 기준금액을 상향 설정 가능

< 시스템 기능 구현 요건 [별지3-1] >

- ③ 월별 연구생활장려금 대상 학생을 구분하여 조회·집계 가능해야함
- ④ 대상 학생별 지급내역 합계가 기준액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식별 가능해야함("충족", "부족")
- ⑤ 기준액 대비 부족 시 부족 금액을 월별로 조회·집계 가능해야함

3 기관계정 수입·지출·잔액 확인(☞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구현 권고)

-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상 기관계정의 수입·지출·잔액 확인

< 시스템 기능 구현 요건 [별지3-2] >

- ⑥ 기관 통합관리계정별(대학, 학부/과 등) 수입액, 지출액, 잔액을 시간순, 항목별, 총액 등을 필요에 따라 조회 가능해야함
- ※ 그 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상 요구되는 기관계정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 충족 필요

별지3-1

월별 이공계 대학원생 명부 및 월별 학생별 재원별 지급 내역(안)

< (예시) A 대학 00년 0월 학생별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>

성명	과정	국가 연구자 번호	원 소 속 대 학	학 과	학 번	학 적 상 태	연구생활장려금 (최저지급액 보장) 대상 여부 (이공계 전일제) (O/X)	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재원 일체 (산학협력단에서 파악 가능)						
								정부 R&D 학생인건비			민간 R&D 학생인건비	BK21 장학금	기타 (타 학교 과제 등)	총 지급액
								특례(통합관리과제)		일반 (비통합 관리과제)				
								기관계정에서 지급						
								연구책임자 계정에서 이체 + 정부지원금						
								1	석사					
2	박사						O(대상)						80/110+ (충족)	
3	석사						X(비대상)						nnnn	
4	석사						O(대상)						80/110+ (충족)	
5	박사						O(대상)						80/110+ (충족)	
6	석사						O(대상)						80/110+ (충족)	
7	박사						O(대상)						80/110+ (충족)	
8	...						...		...	...		...	80/110+ (충족)	
9	...						...		...	...		...	80/110+ (충족)	
10	박사						X(비대상)						nnnn	

※ 대학 산학협력단은 소속 학생의 타 대학, 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 현황을 파악하고, 이를
기준액 충족 여부 판단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함

별지3-2
기관계정(대학-학부-학과)의 수입 및 지출 내역(안)

< A 대학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계정 수입·지출·잔액 현황 >

(이해를 위해 재배열, 실제 데이터는 일자순 정렬)

연번	일자	수입			지출		잔액
		출처(계정)	내용	금액	내용	금액	
		정부	정부지원금(대학계정 운영비 제외)				
		대학	대학 자체 예산 투입 등				
		각 연구책임자 계정	일정금액 이체(1~12월)				
		각 연구책임자 계정	추가 기여				
		각 연구책임자 계정	상환금				
			발생 이자				
					학생별 인건비 지급(1~12월)		
...	...	...			...		...
...	...	...			...		...